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66

발의연월일: 2022. 9. 22.

발 의 자:임호선·고영인·권칠승

황운하 • 한정애 • 고용진

이장섭 · 이학영 · 신정훈

송재호·김민석·강병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스토킹처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2차가해를 하거나 협박 및 위해 등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한 제18조제3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합의를 종영하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협박을 수개월 이어갔다는 것이 확인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등,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의 등을 명목으로 하는 스토 킹 행위와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 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제21조 및 안 제2 2조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7조제5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제4조제1항제3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긴급응급조치의 불이행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 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 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	
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	
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	
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	
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긴급응</u>
	급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
	<u>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유선ㆍ
	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위
	<u>치추적</u>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5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 다.

- 1. (생략)
-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가. ~ 다. (생 략)

<u><신 설></u>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기 - 미 (원웨리 가 Ó)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4조제1항제3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	
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	
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	
1항제5호에 따른 조치의	
<u>결정</u>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1/1/ U	
.	

1. ~ 4. (생 략) <신 설>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제21조(긴급응급조치의 불이행죄)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 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 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

1. ~ 4. (현행과 같음)

5.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유선 • 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위 치추적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 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 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

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으를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

<u>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u> <u>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